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6년 3월 13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6년 3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06년 3월 16일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신영근

나.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인근 주민 간 발생 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의 신속·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참고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 제36조, 제37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황 창 수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인근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